

대구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단1469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1.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1. 9. 30.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347,656원 및 그 중 30,822,329원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2021. 1. 27.까지는 연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20. 2.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6. 15. 접수 제285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0. 6.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출약정의 체결

1) 피고 A은 2011. 6. 10.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4,250만 원, 보증기간 2011. 6. 10.부터 2012. 6. 8.까지(이하 보증기한 2021. 5. 28.까지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D은행에 제공하고 D은행으로부터 4,25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기간 중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 절차비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 1) 피고 A은 2020. 6.경부터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2020. 7. 28.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20. 11. 12. D은행에 대출채무금 30,822,3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2)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법적조치비용으로 525,327원을 지출하였다.
- 3) 원고가 이행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이율은 연 8%이다.

다.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 1) 피고 A은 2020. 2. 7. 피고 C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6. 15. 접수 제28518호로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2) 피고 A은 2020. 6. 19. 피고 B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6. 19. 접수 제29532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 피고 C,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31,347,656원(대위변제금 30,822,329원 + 법적조치비용 525,327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30,822,32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11.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1. 1.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20. 2. 7.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신용보증약정, 피고 A과 D은행 사이에 대출약정이 각각 체결되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경주시 E 답 122㎡, F 답 79㎡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의 시가는 총 73,775,900원 상당(등기부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합계 약 4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재무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 가까운 장래에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3)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가 2020. 7. 28. 발생하였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D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사후구상금

채권도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등

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시가 총 73,775,9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재산이 없었으며, 소극재산은 이 사건 채무를 제외하고도 4억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A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0. 2. 7. 피고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처분하였으며, 그로써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그리고 그 당시 피고 A으로서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이에 대한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 수 없었고, 피고 A에게, 2020. 2. 7. 2,000만 원, 2020. 5. 15. 1,000만 원, 2020. 6. 15. 8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채무담보를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C은 피고 A의 처형으로 피고 A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 C 스스로도 피고 A의 처이자 자신의 동생인 G이 당시 빠듯한 살림으로 카드빚을 지고 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피고 A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에 관하여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가 추정된다.

나. 피고 B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관하여

1) 항변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 수 없었고, 피고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B은 피고 A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불과 1개월 뒤인 2020. 7. 27. H에게 그 취득가액의 두 배에 달하는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다시 매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 방법 : 가액배상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이 2020. 7. 27. H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0. 8. 5.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이 H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회복하여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2020. 7. 27. H에게 1,000만 원에 매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

역시 1,000만 원으로 추인할 수 있고(피고 B도 위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1. 12. 현재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은 30,822,329원이므로, 원고는 그 중 적은 금액인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선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경주시 답909㎡
2. 경상북도 경주시 답360㎡ -이상-

